

**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·정차 금지!**  
**소방차 전용 구역은 비워둘수록 골든타임을 단축시킵니다.**



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(소방기본법제21조의2제2항)

**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불법 주·정차를 근절해주세요.**



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에 상습 불법 주·정차 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『주차금지 구역』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최근 제천,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에 불법 주·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**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 33조(주차금지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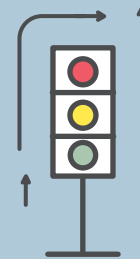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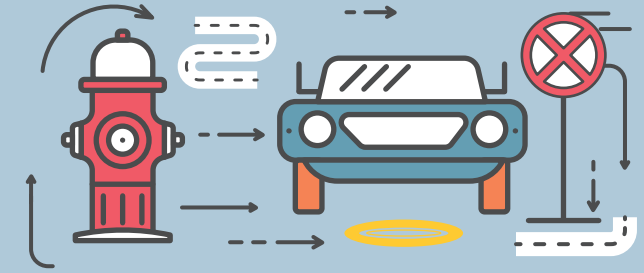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

**서울특별시·자치구**

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TEL.02-120  
<http://www.seoul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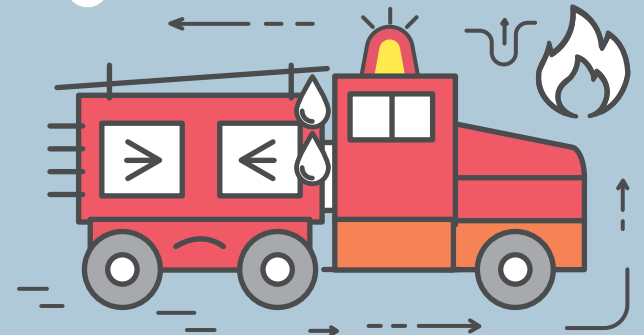
I·SEOUL·U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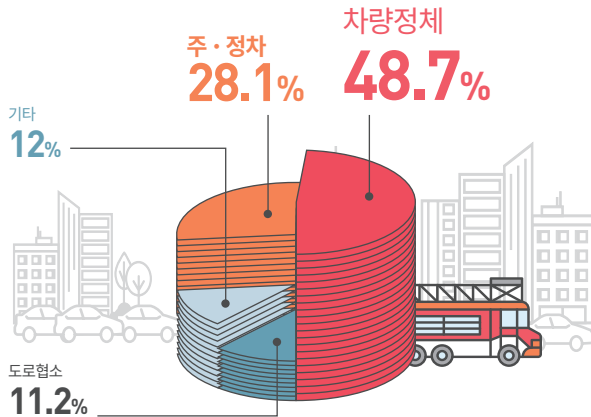


**소화전 5M이내 불법 주·정차!**  
**내 가족의 생명을**  
**빼앗아갈 수 있습니다**

대형화재를 막기위한 소화전 5M이내,  
 소방차(긴급차량)통행로 확보가 시급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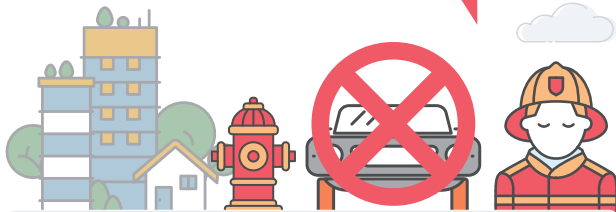


##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



※ 특히 주·정차 장애는 24시, 13시, 18~19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

**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**  
이제는 잠깐 정차도 안됩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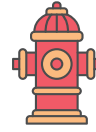
###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 32조(주·정차금지)

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,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의 곳

▶ 현재 잠깐 정차 가능하지만 '18.8.10부터'는 주·정차금지 장소로 변경되어 잠깐 정차도 안됩니다.(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사항)

지상식 소화전, 지하식 소화전, 비상식 소화장치,  
연결송수구, 화재경보기

**즉시단속!**



화재 발생 시 소화전 5M  
소방통행로 확보!  
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



## 소방용수시설종류



지상식 소화전



지하식 소화전



비상식 소화장치



연결송수구

## '18.8.10부터 소화용수시설 5M 이내 주·정차 시 즉시 단속



지상식 소화전 앞 위반차량



지하식 소화전 위 불법주차

## 단속대상 : 소방차(긴급차량)통행로



소방차통행로(긴급차량)통행로가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임

##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 32~34조(시행령 제11조)